

第11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2. 6. 19 ~ 6. 20)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29
나)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변안동의서.....	31
다)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37
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41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6월 19일 (금요일) 14시 00분

의 사 일 정(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3.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기타 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권혁풍위원외 3인 발의)
4.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7. 기타 안건 처리

(14시 00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2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2년 6월 10일 교육감으로부터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등 두개 의안에 대한 의결요구가 있었고, 의사국설치조례 번안동의안에 대한 의안이 계류중이어서 상기 내용을 의안으로 하여 1992년 6월 1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92-5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두번째, 제10회 교육위원회 의결 의안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삭감 조정액중 9천675만원은 추

후 교단지원 경비로 반영토록 요청하는 부기를 달아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 의결한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세번째, 제11회 교육위원회 처리 안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두건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제10회 임시회의시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한 부교육감님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회신이 "사무직원 정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가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바, 여기에는 '92년도 충청북도교북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야영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등 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계류중이며, 지금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 04분)

2.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 폐지안과 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의사국직제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직원 정수에 대한 동의 의견을 회신 받았기 금번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번안동의의 건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아시다시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것이나, 교육감에게 이송하기전에 당초 발의자였던 권혁풍위원의 3인 위원회의안이 제출되어, 그동안 교육감과 협의관계로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권혁풍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사회대로 나옴)

○ 권혁풍 위원 : 권혁풍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번안이유를 설명드리고, 다음에 주요골자 및 번안동의의 내용, 그리고 당초 의결안과의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8회 임시회의시 심의·의결하였던 본 조례안에서는 의사국의 직제와 정수만을 정하고, 하부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관리상의 측면과 타시·도와 균형등을 고려해서, 의사국의 하부조직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하여 비서관등의 인원을 조정하고, 의사과와 의안담당관, 그리고 의안연구관을 의사국의 하부조직으로 본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합니다.

안 제3조 제2항중 "감독을 받아"를 "명을 받아"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항,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안 제4조중 "17"명을 "14명"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시행규정"으로 하고, 동 조중 "교육위원회규칙"을 "교육위원회규정"으로 하여 이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 직원의 파견 요청입니다.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합니다.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내용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표를, 그리고 당초 원안과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번의안은 교육감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느라 금번 회기에 상정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사정의 변경에 따라 당초 조례안을 발의하였던 본인 외 3인 교육위원 모두의 의사로 번의하는 것인만큼 번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4.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서로 관련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의사일정 3호 의안인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구암분교장폐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호 의안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별표 4, 3쪽의 국민학교 현황은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님 많음)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감사합니다.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국직제조례안에 대한 번의안은 권혁풍 교육위원 외 3인이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직원 정수에 대하여 이미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안은 소규모 분교장의 폐지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례심사 소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국직제조례안에 대한 번의안과 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등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일, 김응복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상일,

김응복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6. 기타 안건 처리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기타 안건처리의 순서입니다.

전번 제10회 임시회에서 권혁풍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중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지난 10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의때 권혁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3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전문직을 공개채용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내용과 두번째는 "재학생의 학원수강 여부"와 세번째가 "인력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세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가지중 첫째, "전문직을 공개채용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서, 공개채용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을 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자기 연수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고, 둘째는 유능한 교사 전직, 승진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세번째가 선발 및 순위결정에 비교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네번째가 전문직의 고령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려는 이걸 실시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단점은 첫째,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까닭에 시험치르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의 지나친 과열로 그 영향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그 지도하는 데 소홀한 감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자격 대상자의 선발을 과거에는 시험을 보아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폐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교감자격 응시자에 대한 시험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시험실시로 말미암아 갈등을 초래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교장임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후에 전문직을 선호하는 전문직 수가 점진적으로 격감돼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임기제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임기제에 꼭 맞는 이런 전문직이라는 더욱 다행스러운데, 그 기한이 조금 남았다든가 하려는 전문직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승진, 전직을 기피하고, 또 이후에 재직기간이 만기된다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그 다음 세번째, 전문직의 자질평가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험을 보며는 지식위주의 시험은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지식만으로서 전문직의 자질이 있다고는 평할 수가 없습니다.

까닭에 지식수준의 점수화는 평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보다도 전문직의 자세와 전문직으로서의 인격과 전문인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등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인사관리에 난점이 있습니다.

그 예인 즉, 대개 교원이 2정으로서 1정 법정년한은 3년입니다만서도, 또 1정으로서 교감자격 취득하기 위한 년한은 3년입니다.

그러나 법정기준은 3년인데, 현실은 수십년이 있어야만이 교감강습을 받게 되고 또 교감으로서도 수십년이 있어야만이 교장 강습을 받도록,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장된다면 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전형을 통한 이런 전문직을 등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이러한 법 이외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성이 초래가 되느냐는 교원이 검직할 때, 우수한 교사라고 해서 등용을 시켰습니다만서도 일정한 기간 근무해서 검직할 경우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는 교감으로서 내보낸다든지, 또 교장자격을 취득을 하려는 교장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데, 이게 젊은 교원이 들어와서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다가 다시 검직할 경우에는 재자리 교원으로 다시 돌아야 한다는 이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상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런 분에게 특혜를 주어서 전체 균형맞지 않는, 이러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특혜는 부여할 수

가 없는 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할 때에 유능한 전문직을 등용을 시킬 이런 시험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마는 이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이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2호 기준에 의해서 교사나, 교감이나, 교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문직으로서 소양이 있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이 있고, 전문직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은 그 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여서 저희들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전문직에 들어 오려면 교장이나, 교감이 들어 온다고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에 기대하는 역할 수행 능력과 임용부서에 필요한 인재들 선발하고 그 선발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시험전형의 장·단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단점이 노출이 되었고, 두번째가 일선교사들의 전형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격감이 되어 있다는

현실, 세번째가 그 밖에 각종 문제점등을 종합 분석·검토한 결과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성, 또는 서류의 신빙성을 보완하고, 평정에 있어서 주관성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류전형과 아울러 앞으로 면접전형을 보완해서 종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원수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수강에 대해서는 시책방향 결정의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재학생의 학원수강 허용에 대한 의견이 아시다시피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학원수강 허용요구의 시책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학생 학원수강에 대한 정책변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7.3 교육개혁조치에 따라서 재학생 학원수강 전면 금지가 됐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완화가 되어서 방학기간 중에만 학원수강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7월 22일부터는 이 학원문제를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도록,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수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1차에서 4차에 걸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1차에는 학생이나 교사는 찬성을 하지마는 학부모는 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2차 3차에까지도 학생들이나 교원들은 찬성을 했지마는 역시 학부모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보고 말씀을 드릴 때, 4차에 저희들이 좀 광활하게 앙케이트를 던져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이것을 종합을 해서 오늘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며는 역시 학생과 교사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피센테이지를 보니까, 과거는 찬성이 42%, 그러니까 4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9.9%, 약 50%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반정도는 1차, 2차, 3차때 보다 역시 학생들의 욕구, 교원들의 여론등등을 종합해서 학부모들이 다소 태도가 변화됐지 않았으나, 해서 거의 50%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부와 숙고끝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학원수강에 대한 시책방향

결정을, 역시 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들이 그래도 역할 분담을 해서 지도하는 것이, 보다 더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노고도 좀더 덜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과 또 학생들이나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중학교에 한해서 허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허용사유는 고등학교 입학고시 선발고사가 아시다시피 수학능력 시험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별도의 입학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입시위주의 과열 과외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가 현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유해환경업소, 또는 학원주변 생활문제 이런 등을 강화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다양한 특별활동 실시로 전인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각자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9월 1일부터 중학교에 한해서 허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언급해 드릴 내용은 그러며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또는 각급 학교에서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허용했을 때의 문제점, 다 잘 아실것로 미뤄서 문제점 해결방안만을 말씀 드리며는 보다 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해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학습의 개별화 및 진로지도에 내실을 더더욱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활동의 다양화에 더욱 힘쓰겠다, 그리고 우리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당국에서는 학원주변 생활지도를 더더욱 강화해서 문제를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 해서 시설보완, 강사양질, 이런데 심층지도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전부 강도있게 지도하고, 감독해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이런 요인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며는 중학교 수강허용은 가능하지 않겠으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학원수강 허용의 교육적 기대는 첫째가 잘 아시다시피 각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보충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과 두번째, 학교와 사회교육 기관과의 역할 분담으로 다양한 교육지도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번째, 음성적으로 고액 과외를 실

시하는 것을 추방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점과 네번째로, 특별활동 활성화로 전인교육 내실화에 치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교육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력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감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고, 또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또 과학교육국, 그리고 보건과 증설에 따른 인적보완, 또는 업무의 비중 등등을 한번 참고로 해서, 신설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만 서도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진단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행정업무의 계량화, 표준화, 객관화 하기가 곤란한 이런 특성 때문에 그 실시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인력진단을 실시하므로써 지방교육 재정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력과 사무의 재배분을 통해서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에서는 신설되는 기구에 대비해서 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단대상 기관은 도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청 여기만을 우선하고 각급 학교에는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조직·사무·인력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해 볼까 합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은 아마 신축성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기구가 확정되기 이전에, 금년내로 이걸 추진해서 실시해 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지

방교육자치법이라는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너무나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정책을 우리 스스로가 세워서 추진할 수도 없는, 물론 추진집행기관은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그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만이 유일한 우리의 통로가 아닌가, 그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문직 채용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헌법에도 물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또 교육의 중요성, 너무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데,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하신다면은 이 전문성이란 것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 것인가, 전문성이 그렇게도 중요한, 그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전문직을 기피 하는 현상이 나게 됐느냐, 그 기피 현상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전문성을 제고를 해야 될텐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특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들 하기를, 어떤 그 뚜렷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특채를 통해서 어떤 그 인사부조리가 암암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확실한 답변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한 그 아카도 말씀하신 것 처럼, 객관성이 유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역시 공채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 어떠한 기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대안이 제시돼야만이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보다시피 제주도, 부산, 서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학원수강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동안 네번에 걸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상당히 참고심을 하고 계신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행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과연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에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붙잡아 두고, 공부를 시켜야만이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가서 2천년대의 유능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건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갑니다.

더구나 우리 충청북도는 수학능력평가라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다른 도보다 1년 앞서서 하는 그러한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어찌하여 학원수강만은 다른 도에 뒤쳐지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즉, 중학교는 허용한다고 하시니까, '그 추세에 맞는다.' 혹은 '수학능력평가 차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하고 수공이 갑니다마는 고등학교를 여기서 제외시켰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얼마 안가서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할텐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겠는가, 미리 할 필요는 없는가, 중학교와 같은 성질에서 좀 더, 그것도 미리 좀 하려는 거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데 대한 의문이 가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적으로 학원이 없는 곳, 즉 농촌 같은 곳, 청주나 충주 같은 도시에는 물론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런 농촌실정에 맞는 그런 방안이 과연 고려가 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감사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저도 필요성을 느낀다고 봤는데, 집행청에서 여기에 동의를 하셔서 금년내에 실시를 한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실시하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대 1로 답변해 주시지요, 한분 한분.....

○ 부교육감 박동기 :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첫째에 보충질문하신 전문직 공채에 대한 것, "왜 기피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들어 왔을 때에 상위자격증을 획득해서 나갈 기회가 좋으려는 선호를 할텐데, 아시다시피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여기 13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직에 발탁이 돼서 전문직으로 있을 후에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교감내지 교장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하려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까닭에 교원으로서 전문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기피한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두번째 교감내지 교장들이 기피하는 것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권혁풍 위원 : 저, 제가 기피 현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피하고 있는 현상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장학사를 할려고 안합니다.

저도 참 들어보니까, 월급에도 한 5, 6십만원 차이가 나고, 또 교육청에서 여러가지 대우라든가, 그 갈등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로 해서 장학사를 어떻게 하든 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럼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방지 방안을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직에 보다 더 유능한 분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12개항의 전문직 선발 그 요채를 설정한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첫째가 두개 항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한번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10개 요소는 교직원, 두번째는 품성, 세번째는 책임감, 네번째는 연구력,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행정능력, 그리고 여섯번째는 협동·봉사상, 그 다음 일곱번째는 창의력, 여덟번째는 지도력, 그리고 아홉번째는 사무관리, 끝으로 교과연구입니다.

이러한 세부항목을 설정을 해서 추천한 분들을 하나 하나 전부 채점을 해서 몇 점 이상을 하느냐 하려는 평균 80점이상인 이런 분을 전문직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번째 질문하신 학원개방문제, "중학교만 굳이하고 고등학교는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도는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수능력고사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은 좀 지

양을 해야겠다, 그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부담이 없는 이러한 중학생에 한해서 이번 9월1일부터 허용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봤느냐" 이런 말씀인데, 역시 고려를 해봤습니다.

아까 반대쪽의 예기는 대개 그 읍·면소재지에 학교의 학부모들이 적극 반대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는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역 교육장이 학교 교장과의 협의하에 역시 학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을 학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데, 제가 자꾸 너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피 현상", 장학사들 이게 참 우리 교사들이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선생할 수 있다." 하는 교사에 대한 전문성 부인입니다.

"교사라는 것은 별것 아니다, 전문성이 뭐가 있느냐?" 이래서 교권도 서지 않고 제

대로 교육도 안되는 것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올린다는게 상당히 중요한데, 헌법정신에도 물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피하는데, 전문직, 그것을 어떻게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있고 나서, 그러고서 참 특채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특채만 계속한다면 전문성 제고의 방안은 영원히 백년하청이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가 좀 여쭙어 봤던 겁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기피하는 데, 뭐 이런건 대개 아실 겁니다만서도 일단 추천을 받을 때, 참말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췄느냐, 안갖췄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전문직이 대개 알고 있고 또 본인이 희망을 안하고 추천이 안됐다손치더라도 '이 사람은 전문직으로 발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서 전문직으로 발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이나 교장직에 있는 분이 기피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임기제 관계 때문에 연한을 따진다는지, 물론 증임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상황

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해서 기피를 하는 겁니다.

즉, 그런 분에게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분은 꼭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이 분은 참 자질이 있는 분인데, 희망도 안하고 추천도 안들어 왔고, 필요하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해서 전문직으로서 발탁을 합니다.

즉,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일조일석에 나올 수는 없을 걸로 믿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권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권혁풍·위원 :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봅시다.

○ 부교육감 박동기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마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지요?

○ 부교육감 박동기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계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안)변안동의의 건 : 별첨 2.
-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 별첨 3.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4.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년 6월 20일(토요일) 10시30분

의 사 일 정(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의안의결

-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안)
- 나.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 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 의 된 안 건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안)
- 2.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충주성남국교 민원관련 현지 확인반 편성의 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

으신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안)과 구암분교장폐지안 그리고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신 후 의결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1분)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안)의 건

○ 의장 김영세 :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로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로론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의안대로 그의 부분은 당초 의결된 대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2.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과 의사

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로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는 본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암분교장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4. 충주성남국고 민원관련 현지 확인반
편성의 건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의견 말씀하
시죠.

○ 이상일 위원 : 이제 다 끝나신거죠?

○ 의장 김영세 : 예.

○ 이상일 위원 : 본 안건이 다 통과된
후에 지역 교육환경 문제가 심각한게 있어
서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고, 그 문제가 앞
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달에도 제가 성남국민학교 문
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충주시
교현동에 성남국민학교라고 '71년에 설립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설립을 할 때, 왜 그랬
는지 모르지만 운동장이 북쪽에 있고, 교사
를 남쪽에 배치할 해놨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요즘 고층아파트를 세우고
있어,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해가지고 학부
모들이 지난번에는 몇차례 농성을 하고, 백
여명이 시장실을 점거해서 한 10시간 동안
복새똥을 놓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를 몇번 했는데도 시 측에서는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고, 학교 학부모들은 물리적으
로 이것을 저지하려고 상당히 실랑이를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교육위원님들도 아셔야 겠고, 앞
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
까 하는 공동의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관계관의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
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른 위원 이의 없으
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동하시죠?

(반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현재 담당 국·과
장은 도의회 본회의가 개최돼서 거기에 출
두한 것 같고, 담당 주무계장이 있을 것 같
으니까 주무계장이라도 나와서 그 진상을
여기서 소상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발언대로 나옴)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허락해 주신 의
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상일위원님께서 성남국민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에 관한 지방여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우양건
설이라고 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우양건
설 김정교라는 사람이 '91년도 4월부터 사

업 승인을 얻기위해 충주시에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 7월20일 본건 주택건설 입지심의 신청에 대한 교육장의 반대 회신을 낸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9월10일날 진정서 학부모대표 김진영의 224명이 시청으로부터 진정서가 이첩이 돼서 '91년 10월10일날 진정서 처리 결과에 따른 교육장 의견이 발송됐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10일날 우양아파트 사업추진 의견서가 접수되고, '92년 1월3일날 주택건설 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1월3일날 행정예고로서 접수가 되고, 1월5일까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그런, 시일이 촉박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는 행정예고가 잘못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현재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월4일날 교육장은 "도시 교육 환경상으로는, 보건법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반대한다", 하는 것을 1월4일날 교육장이 회신을 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22일날 교육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축입지심을 하다가 결과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13일날 사업측과의 협의

를 거치고, 그 다음에 2월14일날 시의회에서 시장에게 드리는 만장일치 반대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9일날 건축입지심의 예정이 다시 학부모들의 반대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21일날 우양건설의 고층아파트 층수 일부변경 심의가 있었습시다다는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4일날 변경안에 대한 교육장 의견서가 봉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육장 의견서는 "15층 건축을 갖다가 5층으로 낮춰서 해라고" 라는 그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28일날 건축입지 심의회가 소집이 돼서 이때 학부모형 350명이 그 시청에서 데모로, 이 회의는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10일날 건축입지 심의회가 결정이 돼서, 이때 우양건설이 건축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형 150명가량 정도가 다시 시청에서 데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지심의회 결정은 변경이 되어서 확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는 당초에는 학교을타리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까지 20.5m로 하고 아파트 신축높이는 15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학부형들의 강렬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 윗타리로부터 37m, 그리고 학교에서 윗타리까지 7m, 그래서 총 학교로부터 아파트 건축지까지는 44m 거리를 두고서 결정이 되었고, 아파트 층수는 15층에서 13층으로 낮추어서 건축하도록 해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여기에도 다시 승복을 하지 않고 일조권이 약 125일정도 가량, 즉 10월20일부터 익년 2월22일까지 약 125일간 그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관계 여론에, 즉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시청, 이렇게 진정을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 관계자들은 이것이 발송이 되자 근 1년간 사업을 끌어온 때문에, 제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서 지방에 여론화 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부에 질의를 내서 '합당하다'는 그런 결정을 받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학부형 약 2천명 가량은 대통령, 김영삼 대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내부부장관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어저께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원서는 발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다시 충주시 교육장이

충주시장에게 다시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

그 구두 협의한 결과는 "이러한 현재의 학부형들이 강렬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는 청원서를 관계 여론에 제출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니 다시한번 우리들의 입장을 재고해 달라"는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충주시장의 답변은 즉 "우리는 건축법이라든지 여기에 합당하게 결정이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자가 없으니까 청원서를 제출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가 뭐냐하면, 현재 후관에 있는 건물이 '71년도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다가 건축이 됐고, 현재 내용년수로 봐서는 철근콘크리트는 45년이 지나야 다시 개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마는, 아직도 그 내용년수에 훨씬 못미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들을 분석해 볼 때 125일간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다시 분석을 해볼 때, 대충 방학이 12월24일부터 됩니다.

그리고 익년 2월 중순까지 시행이 된다고 하며는 10월 중순부터, 약 20일부터 11월 한달, 그 다음에 12월 방학전까지, 거기

에 토요일·일요일날 빼고나머는 약 한 30 일내지 50일정도의 일조권이 침해될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오전에는 햇빛이 들고, 약 정오부터 오후에 햇빛이 안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측의 기관이 합법상만 가지고 시청에서는 논하고, 또 우리의 학부모 측이나, 우리의 교육청 측에서는 합법성 보다는 교육의 환경에 위해가 있다, 일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청측에서 합법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로서의 그 대책은 앞으로 다시한번 최종협의를 거쳐서 적극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를 모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지금 이상일위원이 긴급 발의를 해서 충주 성남국민학교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다른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이재희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재희 위원 : 이계장님 말예요, 지금 국민학교가 이상일위원님 얘기로는 배치가 지금 위쪽이 운동장이고 아래쪽이 교사 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입지적 조건

이 뭐 달라서 그렇겠지만, 우선 그 학교배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예,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건축은 '71년도에 됐습니다.

그 입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는 현재 우양아파트가 건설하는 그 입지가 바로 앞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현재 남쪽으로 되어 있으며 후관이 있고, 15m 떨어져서 북쪽으로 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앞으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장이, 뒷편이 북쪽이 되고, 교사 앞면이 남쪽이 됩니다.

앞면이 되는데 거기가 건축당시에 입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려는, 운동장은 논이었습니다.

논이었고, 교사 그 터는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입지조건이 되어 있던 것인데, 밭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아마 '71년도니까 약 20년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는 밭이 공터인 밭이었고, 같은 위치에서 거기 교사보다 앞에 우양아파트 짓는 위치가 1.5m 높은 전답입니다, 전답.

전답으로서 그때 건축할 당시는, 뭐 여기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예견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위치상에 교사의 그대로 지형의 입지조건을 살려서 앞에다가 교사를 신축하고, 그 북쪽으로 해서 운동장을 그대로 정지해서, 논바닥을 정지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예, 김응복위원 질의 하시죠.

○ 김응복 위원 :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집행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여하튼간에 우여곡절 끝에 37m, 7m, 44m, 13층, 이것이 결론적으로 "문제이다, 합법적이다", 건축법상 여러가지 면에서 하자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강행할 방침이고, 이런 것 같은데, 학부형은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일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예, 그렇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예, 장기적으로 120일 내지 150일간 되는 것이든, 30일내지 50일간 되는 것이든 일조권 침해는 되는게 사실

이고, 또 한가지 50일간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사실상 된다면은 평소에 답답함과 혹은 여러가지 면에서의 환경적인면·교육적인면·정서적인면·위압감, 여러가지 면으로 확실히 단 하루정도 침해되면 모르지만 50일까지 침해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당국으로서도, 집행기관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혹은 저쪽 측에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도 따져보고 건축법으로도 따져 봤다는데, 우리 당국으로서는 뭘 어떻게 하면 따져볼 수 있는지, 제자리서 따진다고 해서, '합법적이다'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측에서는 참 그냥 수긍만 하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요.

사실상 언뜻 생각해 보려는, 학부형이 적어도 2,000명이 동원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은 확실한 반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미관상 나쁘고 어떻다고 학교옆에 바로 고층 아파트가 서고하니까 위압감도 생기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심각한 문제인것 같아요.

이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도 그냥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

하고, 여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하고 혹은 법 관계도 따져보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학부형들이 2,000명이 동원돼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차례 거기가서, 더군다나 중앙까지 진정서 내고, 시청까지 접거하고 이러면서 하는 마당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고 확실히 뭔가 시장이나, 시장은 어디 사람이고, 내내 층주분이고, 또 교육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집 짓는 일시적인 조금 양보해줄 문제이지만, 이 교육의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인거예요.

또 한가지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학부형이나, 학생을 생각하며는 지방으로 봐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좀 규명도 해보고, 그런 자세에서 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학교로부터 20.5m가 37m로, 그 다음에 아파트가 15층에서 13층으로, 그리고 바토 율타리 경계선으로 해서 8m의 소방도로가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취소가 되고 그대로 해서

여러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것을 완화해가지고,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신설되는 학교, 아니 또 그 다음에 짓는 학교의 근방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진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에 대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 문제는 그 법률 해석상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들어 그 건축주에서는 건축법을 가지고 따질테고, 학교측에서는 뭐 따지는 것이 다른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환경법이라든가.....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예, 저희들도 보건법하고 학교시설 설치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와있는.

그런 것에서 보며는 그 내용은 쾌적하고, 통풍이 잘되고, 교육상 유해롭지 않는, 그러한 추상적인 말로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뭐 몇 미터라고는 없고요?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예,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계법과 상관관계를 이뤄서 양쪽이 조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관계법은 그렇게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유해롭지 않게, 통풍이 잘 되고, 일조권 침해 받지않는 그런 사항으로만 관계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제가 한가지 질의해야 겠네요.

그 학교환경정화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의 문제이죠.

그러면 그 두가지 법규중에 어느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그건 제가 여기서 우선한다고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건설관계는 건축법이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학교환경보전법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저촉이 안되는, 같은 법이니까 상위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서로 상치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학교환경정화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할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법이 우선 효력을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걸 한번 집행청에서는 확인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

○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그래서 여기는 충주시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주시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장의 그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뭐, 제 질의는 더 확인해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잠시 침묵)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죠.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이상일 위원 : 그래서 성남국민학교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확인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반 편성을 동의하면서, 그 확인반 구성인원과 일정은 의장님께 위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지금 이상일위원의 긴급 동의를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충주 성남국민학교 환경문제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긴급동의이고, 위원여러분께서 2/3가 찬성해 주셔야 이것이 발의가 됩니다.

찬성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육위원 거수 표명)

전원찬성에 의해서 그러면 확인반을 파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머지 일정과 위원회 선정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거죠 ?

○ 이상일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예, 의장이 알아서 조
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긴급발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 질의·답변 마치고 금번
회기에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의사국 직제

안을 의결하였습시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의사국 직제가 도의회에서 조속히 확정되어
교육위원회 운영에 내실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1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
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폐회)

○ 참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이재희·홍신희·김응복
이근수·김사수·박병해·권혁풍·장충호.

○ 출석공무원 : 15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계성, 중등
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
교육체육과장 김상익, 재무과장 고일영,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11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2. 6. 19. - 6. 20. (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19. (금) 11:00 14:00	간담회(교육위원실)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1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 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건 제안설명 3.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기타 안건 처리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6.19. - 6. 20. (2일간)
6.20.(토)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안 번안동의의건 의결 2.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의결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서

의안 번호	9 - 1
----------	-------

발의년월일 : 1992. 4. 4.

발 의 자 : 권혁풍 교육위원 외 3인

1. 번안이유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의('92.3.30.)에서 심의·의결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서는 의사국의 직제와 정수만을 정하고 하부조직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의사국의 하부조직(직제)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동조례 시행에 따른 사항을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2. 번안주요골자

- 사무직원의 정수조정 17명 → 14명(전문위원,비서관등 인원 축소)
- 의사국의 하부조직(의사과, 의안담당관, 의안연구관)을 조례에 직접 규정
- 교육위원회 사무처리 지원을 위한 직원 파견 요청 근거 신설
- 조례 시행에 따른 사항은 교육위원회 규정에 위임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변안동의(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변안동의한다.

안 제3조 제2항중 "감독을 받아"를 "명을 받아"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안 제4조중 "17명"을 "14명"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시행규정"으로 하고, 동 조중 "교육위원회규칙"을 "교육위원회규정"으로 하여 이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 비 표

원 안	변 안 동 의 안																																																																														
<p>제 1 조 - 제 2 조(생략) 제 3 조(조직) ①(생략) ②의 사국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신설)</p> <p>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7명 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p> <p>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 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별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p>	<p>제 1 조 - 제 2 조(원안과 같음) 제 3 조(조직) ①(원안과 같음) ② 명을 받아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 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14명</p> <p>제 5 조(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교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6 조 (시행규정) 교육위 원회규정</p> <p>【별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직 급 별</th> <th style="width: 20%;">정수</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7</td> <td></td> </tr> <tr> <td>○ 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td> </tr> <tr> <td>지방서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지방행정사무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r> <tr> <td>지방행정주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행정주사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 별정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td> </tr> <tr> <td>전문위원 (5급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숙기요원 (8급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 기능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td> </tr> <tr> <td>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r> <tr> <td>지방운전원(10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body> </table>	직 급 별	정수	비고	합 계	17		○ 일반직계	8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3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정직계	4		전문위원 (5급상당)	2		숙기요원 (8급상당)	2		○ 기능직계	5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3		지방운전원(10등급)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직 급 별</th> <th style="width: 20%;">정수</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td> </tr> <tr> <td>○ 일반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지방서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지방행정사무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행정주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행정주사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 별정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5급상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 기능직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td> </tr> <tr> <td>지방사무보 조원 8등급 (숙기요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r> <td>지방운전원 10등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r> </tbody> </table>	직 급 별	정수	비고	합 계	14		○ 일반직계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정직계	1		5급상당	1		○ 기능직계	6		지방사무보 조원 8등급 (숙기요원)	2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2		지방운전원 10등급	2	
직 급 별	정수	비고																																																																													
합 계	17																																																																														
○ 일반직계	8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3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정직계	4																																																																														
전문위원 (5급상당)	2																																																																														
숙기요원 (8급상당)	2																																																																														
○ 기능직계	5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3																																																																														
지방운전원(10등급)	2																																																																														
직 급 별	정수	비고																																																																													
합 계	14																																																																														
○ 일반직계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정직계	1																																																																														
5급상당	1																																																																														
○ 기능직계	6																																																																														
지방사무보 조원 8등급 (숙기요원)	2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2																																																																														
지방운전원 10등급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조(조직)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 4 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 5 조(직원의 파견 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표

직 급 별	정 수	비 고
합 계	14	
○ 일반직 계	7	
지방서기관	1	
지방행정사무관	2	
지방행정주사	2	
지방행정주사보	2	
○ 별정직 계	1	
5 급 상 당	1	
○ 기능직 계	6	
지방사무보조원 8등급 (숙기요원)	2	
지방사무보조원 10등급	2	
지방운전원 10등급	2	

(별첨 3)

남이국민학교구암분교장폐지(안)

의안 번호	11- /
----------	-------

제출년월일 : 1992. 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남이국교구암분교장은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해마다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화 되자 학부모들은 인근 청주시외 남이국민학교로 통학구역 조정과 함께 학교 통·폐합 요구가 있어 이를 폐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 폐지

3. 폐지근거

- o 교육법 제82조(설립자)
- o 교육법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4. 폐지(안)

가. 일반현황

- o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75번지
- o 학생현황

구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계		비고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남이국교 구암분교장	8	1	8		9	1	3		8	1	12	1	48	4	

○ 교직원 현황 : 교사 4명, 기능직 1명

○ 시설 현황

교지 (㎡)	교실수(실)	화장실(동)	숙직실(동)	창고(동)	사택(동)	비 고
46,292	8	4.5	1	1	3	부지 10,259㎡ 경지 1,521㎡ 임야 34,512㎡

나. 폐지후 대책

○ 학생수용

학교명	구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계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남이국	통합전	26	1	33	1	30	1	50	2	47	1	57	2	243	8
	통합후	29	1	37	1	33	1	52	2	50	2	62	2	263	9
	증 감	3		4		3		2		3	1	5		20	1
사직국	통합전	294	7	304	7	343	8	424	10	402	9	464	10	2,231	51
	통합후	299	7	307	7	348	8	425	10	406	9	471	10	2,256	51
	증 감	5		3		5		1		4		7		25	
현암국	통합전	20	1	16	1	27	1	24	1	21	1	28	1	136	6
	통합후	20	1	17	1	28	1	24	1	22	1	28	1	139	6
	증 감			1		1				1				3	
증 감 계		8		8		9		3		8		12		48	1

○ 교 직 원 : 정원 조정

○ 제 장 부 : 본교(남이국교)로 이관

○ 재 산 처 리 : 교육목적으로 재활용

다. 통·폐합 년월일 : '92. 8. 1.

관계 법령 발췌 (교육법)

- 제82조(설립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①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외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별첨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
----------	------

제출년월일 : 1992. 6.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한 분교장폐지와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역학교 : 남한강국민학교, 충주대림국민학교
- 나. 분교장 폐지학교 :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

3. 개정근거

- 가. 충주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92.1.18.조례 제1356호)
- 나. 교육법 제82조 (설립자)
- 다. 교육법 제85조 (학교의 설립·폐지)

4. 조 례 안 : 별 첨

5. 기타 참고 사항

- o 독립학교설치개정 조례중 주요골자 : 별 첨
- o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o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o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국 민 학 교

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
교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80번지
석 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10번지
중 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동 4번지
청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127번지
한 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동 560번지
덕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울랑동 656번지
남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219-1번지
서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977번지
우 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임동 137번지
모 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372번지
용 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담동 186번지
용담국민학교 현양원분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월오동 71-1번지
운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543-7번지
청 주 내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2동 61번지
창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351번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38-2번지
강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비하동 123번지
내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국동 12번지
서 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촌동 184번지
현 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현임동 91번지
금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15-1번지
복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709-4번지
봉 명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205번지
흥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865번지

명 칭	위 치
덕 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우암동 260-1번지
북 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주중동 428번지
운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운동동 430번지
봉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봉명2동 2141번지
산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신남동택지개발지구내
울 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울량동 1034번지
가 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주시 가경동 752번지
충주교현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남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심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
충주예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단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목 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77-1번지
달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남 한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동 신 분 교 장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447-10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중 인 분 교 장	충청북도 충주시 증인동 510-3번지
충주대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충주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세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세성국민학교 살미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내사리 600-8번지
세성국민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세성국민학교 향산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향산리 379번지
수 안 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 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명 칭	위 치
수회국민학교 팔봉분교장	충청북도 중원군 살미면 토계리 263번지
대 소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이류면 대소리 569-15번지
이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이류면 원오리 889번지
매 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주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72번지
덕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주덕면 제내리 265-1번지
용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 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 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노은국민학교 수룡분교장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수룡리 554-1번지
수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노은면 인락리 119-1번지
양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용대리 257번지
양성국민학교 영죽분교장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영죽리 264-4번지
강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목미리 89-2번지
강천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단암리 412-1번지
능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 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창 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창동리 산 22-2번지
가 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582-8번지
금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금가면 하당리 294-2번지
오 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금가면 유송리 226-3번지
동 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동량국민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동량국민학교 하천분교장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손동리 336번지
대 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 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중원군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명 칭	위 치
산척국민학교 석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석천리 203번지
엄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주평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주평리 455-6번지
목계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태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오랑리 199번지
소태국민학교 덕은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덕은리 229번지
야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야동국민학교 하남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주치리 645-1번지
동명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59번지
의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남당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전2동 255-12번지
남천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1번지
화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산 16-5번지
청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
흥광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아산) 396번지
두학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지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8-1번지
제천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52번지
금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금성국민학교 장선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장선리 98번지
양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
청풍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청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도국리 산 21-7번지
청풍국민학교 금신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상전리 산 8-3번지
수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내리 168번지
수산국민학교 주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도전리 175번지
대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명 칭	위 치
덕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선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선고리 92-3번지
선림국민학교 도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기리 340-2번지
유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신현리 606번지
유덕국민학교 북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수산리 833-2번지
송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 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화당국민학교 운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운학리 320번지
봉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연박리 921번지
봉양국민학교 명양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명양리 605-4번지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옥전리 180번지
봉 남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마곡리 540번지
봉남국민학교 심선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상거리 538번지
왕 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미당리 757번지
공 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공전리 265번지
송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시곡리 1164번지
송학국민학교 송한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송한리 2구 543번지
입 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입석 3리 609-2번지
낭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08-1번지
갈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갈산리 341-1번지
산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277-1번지
미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금 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기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양리 251-1번지
용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용국리 291번지

명 칭	위 치
용곡국민학교 중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중앙리 387번지
가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행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29-1번지
상 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남 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 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회당리 361-1번지
두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 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의국민학교 소전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소전리 653-2번지
도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 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옥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노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외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내국민학교 저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
강 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만수국민학교 공북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337번지
옥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옥산국민학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명 칭	위 치
금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
소 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 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가 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각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유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북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주리 10-3번지
석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둔리 344번지
대 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71번지
비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00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263-1번지
수성국민학교 입동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425-1번지
구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265번지
삼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동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종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중 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수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1번지
수정국민학교 법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210-2번지
북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상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가리 140번지
속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2번지
관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관기국민학교 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9번지
관기국민학교 소여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70-1번지

명 칭	위 치
관기국민학교 기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328-2번지
세 중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번지
탄 부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사 직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보 덕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5-5번지
심 승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심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 동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심승면 내망리 536-1번지
승 죽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심승면 승죽리 192-4번지
수 한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소계리 17-2번지
동 정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회 남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9번지
회 인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회인국민학교 회동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고석리 123-1번지
내 북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원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식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84번지
아 국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 외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번지
정 갑 국민 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정갑리 318번지
죽 향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심 양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 남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군 동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83번지
동 이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우 산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우산국민학교 청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872-1번지
안 남 국민 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명 칭	위 치
삼 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정정리 510-1번지
안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안내국민학교 용촌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160번지
안내국민학교 대동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번지
청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청성국민학교 신서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번지
요 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요금리 19-1번지
능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번지
화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295-1번지
청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34번지
청산국민학교 대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173-1번지
예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50번지
정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675-1번지
이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정리 14-7번지
지 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군 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
대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증 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영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영동국민학교 화신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화신리 228-3번지
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 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용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국리 213번지
구 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41-1번지

명 칭	위 치
부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번지
황 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2번지
용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3번지
노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주 풍 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주풍령면 주풍령리 375-1번지
주풍령국민학교 신안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주풍령면 신안리 63번지
매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국면 노천리 54번지
천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국면 공수리 463-2번지
상 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상촌국민학교 상봉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360-4번지
황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01번지
양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21번지
구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6번지
미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유정리 697-3번지
용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760번지
학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학산국민학교 광평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549번지
봉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범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양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양산국민학교 천태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08-1번지
심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초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459번지
금 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번지
진천 상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 심수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성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명 칭	위 치
신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번지
이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승림리 452-4번지
학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 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한천국민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매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초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93번지
구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36-1번지
구정국민학교 오상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90-1번지
문 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백국민학교 은탄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338-2번지
문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국면 구수리 144번지
만 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성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국면 성대리 498-2번지
상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7-18번지
명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 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신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69번지
제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
감 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이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당리 640번지
장 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광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명 칭	위 치
연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연풍국민학교 신평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37번지
오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04-1번지
칠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 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52번지
문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번지
광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청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7-1번지
송 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16-2번지
송면국민학교 심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심송리 530번지
덕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80번지
신 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어 흥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287-1번지
어흥국민학교 대후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196-1번지
청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428번지
운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운국리 209-2번지
장 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401번지
증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교동 1056번지
죽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심 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신동 1105-2번지
도 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보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화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백 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
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소수국민학교 북상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번지

명 칭	위 치
광신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목도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추신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추신리 575-1번지
추산국민학교 상방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상방리 304번지
세평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213-3번지
수봉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신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평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덕생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심생리 94번지
무극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81번지
무극국민학교 사정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49번지
용천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0번지
오선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233-2번지
쌍봉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이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장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원남국민학교 문암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593번지
하당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소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운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운리 392번지
삼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번지
능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203번지
청룡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번지
생극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앙리 451-1번지
생극국민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번지

명 칭	위 치
오 생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생리 570번지
감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항리 510-2번지
상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 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굴리 2-1번지
원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단양국민학교 여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241번지
상 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단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번지
가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국민학교 횡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횡정리 193번지
장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노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5번지
금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존리 107번지
가 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가곡국민학교 향산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347-4번지
대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보 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11-1번지
영 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별 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별방국민학교 유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유암리 253번지
동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의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어 상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어상천국민학교 연곡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631번지
어상천국민학교 금당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번지

명 칭	위 치
선 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도 당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1리 63번지
가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적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대 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별표4)

신 · 구 대 비 표

(국민학교)

원		평		변			경	
명	장	위	지	영	장	위	지	비
주성국민학교 생	라	경북도 경주시	영동 48번지 라					경북도 영주시
남해국민학교 생	라	경북도 경주시	연진동 1924번지 라					경북도 영주시
중주대림국민학교 생	라	경북도 경주시	연진동 181번지 라					경북도 영주시
대림국민학교 생	라	경북도 경주시	연진동 275번지 라					경북도 영주시

참 고 자 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관련서류

- 충주시등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 ('92.1.18. 조례 제1356호)
- 충청북도립학교설치개정조례중 주요골자
- 교육법 제82조(설립자) 및 교육법 제85조(학교의 설립, 폐지)
-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분교장폐지) 기준

충주시 의회에서 의결된 충주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 주 시 장 조 병



1992년 1월 18 일

충주시 조례 제 1356 호

충주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충주시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과 구역) 별표중 "역전동"의 명칭을 "분화동"으로 하고 성서동 · 충인동 · 충의동 · 용산동 · 지현동 · 분화동 · 용두동 · 달천동 · 봉방동의 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명칭및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성서동	성서동 일원
충인동	충인동 일원
충의동	충의동 일원
용산동	용산동 일원
지현동	지현동 일원
문화동	문화동 일원
용두동	용두동 일원
달천동	달천동 일원
봉방동	봉방동 일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주요골자

1. 행정구역 명칭 변경

명 칭	구 분	위 치	개 편 일 시
남한강국민학교	개 편 전	충청북도 충주시 역전동 1924번지	'92. 3. 1.
	개 편 후 문화동	
충주 대림국민학교	개 편 전	충청북도 충주시 역전동 181번지	'92. 3. 1.
	개 편 후 문화동	

2. 분교장폐지 ('92. 8. 1.)

분 교 장 명 칭	위 치	비 고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75번지	

※ 폐지 사유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관계법령 발췌 (교육법)

- 제82조(설립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①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0.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1. 본교폐지 : 학생수 180명이하, 편성학급 6학급이하의 학교로서 4km이내에 인근교가 있는 경우.
2. 분교장폐지 : 학생수 10명이하의 분교장으로서 인근에 2개교이상 있는 경우
3. 분교장격하 : 학생수 100명이하의 본교.

* 통·폐합 기준적용의 탄력적 운영

- 본교 통·폐합 기준의 4km이내의 거리 개념을 통학편의 제공시에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통학가능 지역까지 확대 적용.
- 학급수 및 학생수등 학교규모가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통·폐합이 가능한 학교는 이 시책에 의거 추진